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

기 관 명 동래구, 북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 기장군

내 용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, 제34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보육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, 동일 아동에게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명단 대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동래구 등 7개 구·군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래 【표】와 같이 총 31건 3,441,100원을 중복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.

【표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현황(2017. 02. 15. 기준)

(단위 : 건, 원)

구/군	계		보육료		양육수당	
계	31	3,441,100	17	1,491,100	14	1,950,000
동래구	3	286,080	1	86,080	2	200,000
북구	1	150,000	-	-	1	150,000
해운대구	20	2,492,810	11	1,142,810	9	1,350,000
금정구	1	150,000	-	-	1	150,000
강서구	1	100,000	-	-	1	100,000
연제구	1	30,170	1	30,170	-	-
기장군	4	232,040	4	232,040	-	-

조치할 사항

동래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86,080원, 양육수당 200,0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북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150,0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해운대구청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,142,810원, 양육수당 1,350,000원을

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금정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150,0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강서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100,0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연제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30,17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기장군수는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232,04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